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18

대 전 고 등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누11563 취득세감면취소결정취소
원고, 항소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 [redacted]청장
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7. 5. 10. 선고 2015구합2149 판결
변 론 종 결	2017. 9. 20.
판 결 선 고	2017. 11.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827,340원, 지방교육세 403,130원, 농어촌특별세 201,5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 각 부과처분의 내용을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18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16-17행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4,827,340원, 지방교육세 403,130원, 농어촌특별세 201,560원을 부과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승은

판사 신동헌

판사 이준명